

〈별표87〉 창상봉합술(3/5cm미만) 대상 수가코드

약관에 규정하는 '창상봉합술(3/5cm미만)'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2부(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)의 제9장(처치 및 수술로)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.

대상이 되는 항목	수가코드
창상봉합술	
가. 안면 또는 경부	
(1) 단순봉합	
(가) 표재성인 것	
1) 길이 1.5cm 미만	S0021
2) 길이 1.5cm 이상 ~ 3.0cm 미만	S0022
(2) 변연절제를 포함	
(가) 표재성인 것	
1) 길이 1.5cm 미만	SA021
2) 길이 1.5cm 이상 ~ 3.0cm 미만	SA022
나. 안면 또는 경부 이외	
(1) 단순봉합	
(가) 표재성인 것	
1) 길이 2.5cm 미만	SB021
2) 길이 2.5cm 이상 ~ 5.0cm 미만	SB022
(2) 변연절제를 포함	
(가) 표재성인 것	
1) 길이 2.5cm 미만	SC021
2) 길이 2.5cm 이상 ~ 5.0cm 미만	SC022

주)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의료행위 당시의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